

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정성미(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)

- ◎ 2013년 9월 명목임금은 2.9% 상승
 - 2013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,402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(3,305천 원) 2.9% 상승
 -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(3,625천 원)은 정액급여(4.1%)와 초과급여(1.9%)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.5% 상승하였고, 특별급여(-1.7%)는 감소
 - 임시·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은 9.2% 증가하여 1,362천 원을 기록하였고, 이는 전년동월 상승률 대비 6.6%p 증가

- ◎ 2013년 1~9월 명목임금은 4.1% 상승
 -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012년 1~9월 대비 4.1% 상승한 3,105천 원을 기록
 - 그러나 2012년 1~9월 상승률 대비 1.7%p 감소해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함
 - 2013년 1~9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는 4.5%, 초과급여는 1.0%, 특별급여는 2.4% 상승하였고, 이러한 영향으로 임금총액은 4.0% 상승한 3,288천 원을 기록
 - 임시·일용근로자는 7.6% 상승한 1,377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하였고, 이는 전년 동월 평균 상승률 대비 0.3%p 증가

- ◎ 2013년 9월 실질임금은 2.1% 상승
 - 2013년 1~9월 실질임금은 2.8% 상승
 - 명목임금 상승률은 2013년 9월과 1~9월 평균 모두 전년동월, 전년동평균에 비해 크게 둔화했지만,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% 수준에 불과한 영향으로 실질임금 상승률은 크게 둔화하지 않음

〈표 1〉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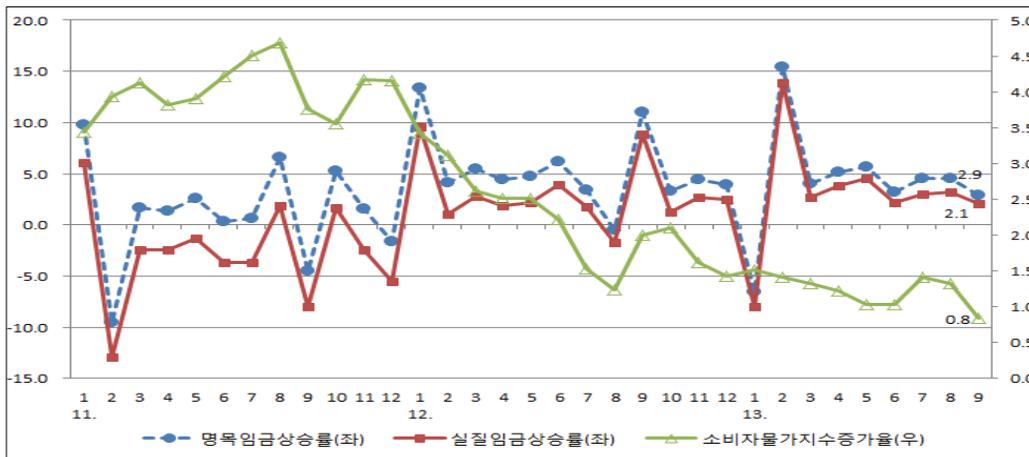
(단위: 천 원, 2010=100.0, %)

	2010	2011	2012	2013				
				1~9월	9월			
전체 근로자 임금총액	2,816 (6.8)	2,844 (1.0)	2,995 (5.3)	2,983 (5.8)	3,305 (11.0)	3,105 (4.1)	3,402 (2.9)	
상용 근로자	임금총액	3,047 (6.4)	3,019 (-0.9)	3,178 (5.3)	3,162 (5.7)	3,535 (11.4)	3,288 (4.0)	3,625 (2.5)
	정액급여	2,234 (4.5)	2,341 (4.8)	2,470 (5.5)	2,455 (5.7)	2,479 (5.4)	2,566 (4.5)	2,580 (4.1)
	초과급여	196 (12.2)	179 (-8.4)	181 (1.0)	180 (1.2)	177 (-3.9)	182 (1.0)	180 (1.9)
	특별급여	617 (12.3)	498 (-19.3)	527 (5.8)	527 (7.8)	879 (37.8)	540 (2.4)	864 (-1.7)
임시·일용근로자 임금총액	1,056 (-1.6)	1,215 (15.1)	1,293 (6.4)	1,280 (7.3)	1,247 (2.6)	1,377 (7.6)	1,362 (9.2)	
소비자물가지수	100.0 (2.9)	104.0 (4.0)	106.3 (2.2)	106.1 (2.3)	107.0 (2.0)	107.5 (1.2)	107.9 (0.8)	
실질임금증가율	3.8	-2.9	3.1	3.4	8.8	2.8	2.1	

주: 1) (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월평균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.
 2) 1~9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
 3) 초과급여는 연장(야근근로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고, 특별급여는 상여금, 성과급, 임금인상소급분,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함.
 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은행, <http://ecos.bok.or.kr/>

[그림 1]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: 천 원, %, 2010=100.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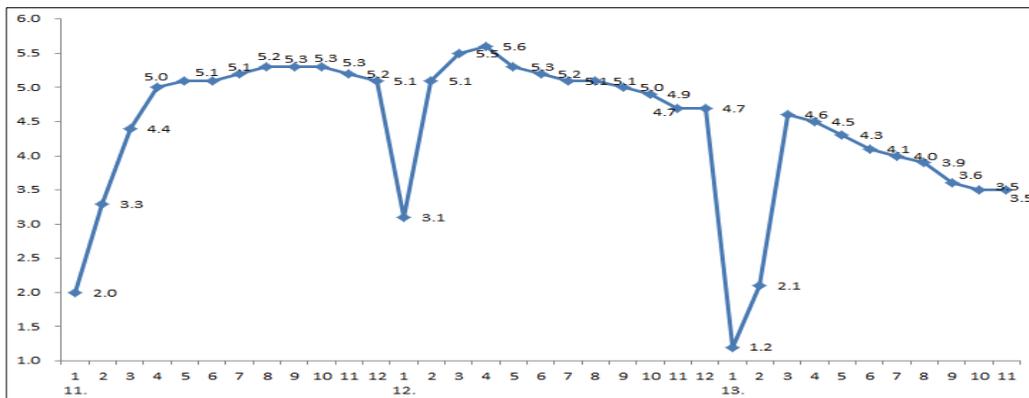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◎ 2013년 11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3.5%

- 2013년 11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3.5%로 2012년 11월 인상률 (4.7%)에 비해 1.2%p 하락

[그림 2]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

(단위: %)



- 주: 1)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, 특별 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.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.
- 2)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.

자료: 고용노동부 e-나라지표, www.index.go.kr

- ◎ 2013년 9월 근로시간 8.1% 감소
 - 2013년 9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55.2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(168.8시간)에 비해 13.6시간(8.1%) 감소
 - ※ 추석의 영향으로 월력상 근로일수가 2012년 9월 대비 2일 적은 영향이 반영
 -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59.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8.6% 감소하였고, 비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14.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.7% 감소

- ◎ 2013년 1~9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평균대비 1.5% 감소
 - 2013년 1~9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1.8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월평균(174.4시간)에 비해 2.6시간(-1.5%) 감소
 - 2013년 1~9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76.9시간으로 전년동월평균대비 1.7% 감소한 반면, 비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23.1시간으로 전년동월평균 대비 1.3% 증가
 - 근로시간 감소 추세는 주로 상용총근로시간 감소에 기인해 비상용근로시간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소 추세가 지속됨

〈표 2〉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

(단위: 시간, %)

	2011	2012	2013			
			1~9월		9월	
			1~9월	9월	1~9월	9월
전체 근로시간	176.3 (-0.2)	174.3 (-1.1)	174.4 (-0.3)	168.8 (-0.6)	171.8 (-1.5)	155.2 (-8.1)
상용총근로시간	182.1 (-1.4)	179.9 (-1.2)	179.9 (-0.4)	174.6 (-0.6)	176.9 (-1.7)	159.6 (-8.6)
상용소정실근로시간	168.5 (0.1)	167.2 (-0.8)	167.2 (0.1)	162.6 (0.4)	164.6 (-1.6)	147.5 (-9.3)
상용초과근로시간	13.6 (-17.1)	12.8 (-5.9)	12.8 (-5.2)	12.0 (-13.0)	12.3 (-3.9)	12.1 (0.8)
비상용근로시간	122.5 (6.2)	122.3 (-0.2)	121.5 (-0.5)	116.8 (-0.9)	123.1 (1.3)	114.8 (-1.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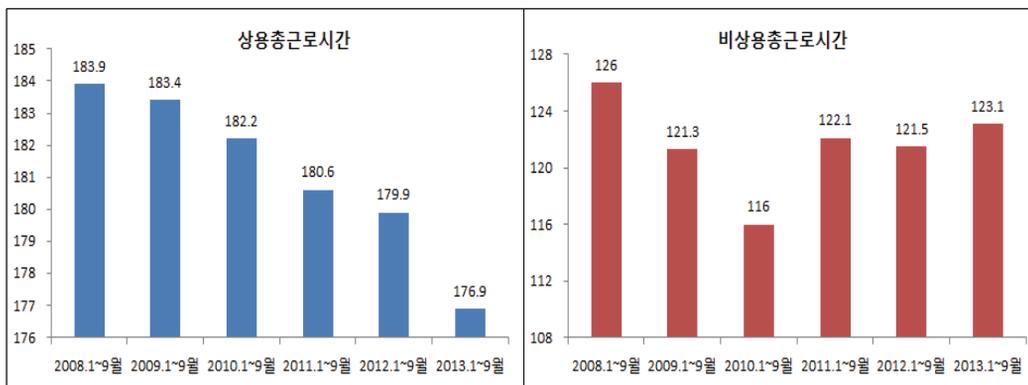
주: 1)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.
 2) 1~9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
 3) (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월평균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.
 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◎ 2013년 1~9월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 감소세 지속

- 2013년 1~9월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2008년 1~9월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 (그림 3 좌측 참조)
- 한편, 비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하였지만, 여전히 2008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(그림 3 우측 참조)

[그림 3] 1~9월 월평균 상용총근로시간(좌측)과 비상용총근로시간(우측)

(단위: 시간)

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◎ 2013년 1~9월 산업별 임금은 전 산업에서 증가

- 특히 근로시간 상승효과가 반영된 건설업(6.7%)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짐
- 그 외 사업서비스업(5.7%), 운수업(5.5%), 교육서비스업(5.5%), 제조업(4.8%) 등에서 두드러지는 상승

◎ 2013년 1~9월 산업별 근로시간은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

〈표 3〉 1~9월 월평균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: 천 원, 시간, %)

	2012년 1~9월		2013년 1~9월	
	임금	근로시간	임금	근로시간
전 산업	2,983 (5.8)	174.4 (-0.3)	3,105 (4.1)	171.8 (-1.5)
광업	3,535 (6.8)	186.0 (0.1)	3,622 (2.5)	179.1 (-3.7)
제조업	3,203 (7.0)	186.3 (-1.6)	3,355 (4.8)	183.3 (-1.6)
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	5,271 (-0.5)	175.6 (0.0)	5,408 (2.6)	174.0 (-0.9)
하수·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	2,612 (6.6)	184.9 (-0.1)	2,717 (4.0)	181.5 (-1.8)
건설업	2,270 (3.8)	151.4 (-1.5)	2,422 (6.7)	152.6 (0.8)
도매 및 소매업	3,089 (7.0)	174.3 (0.3)	3,150 (2.0)	172.4 (-1.1)
운수업	2,569 (8.6)	181.9 (1.1)	2,710 (5.5)	177.1 (-2.6)
숙박 및 음식점업	1,740 (6.1)	187.7 (1.0)	1,760 (1.1)	175.7 (-6.4)
출판·영상·방송통신서비스업	3,850 (4.8)	164.2 (0.6)	3,959 (2.8)	162.2 (-1.2)
금융 및 보험업	4,994 (4.1)	163.5 (0.9)	5,089 (1.9)	161.6 (-1.2)
부동산업 및 임대업	2,184 (9.0)	194.1 (0.8)	2,244 (2.7)	191.2 (-1.5)
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4,049 (6.2)	165.5 (0.7)	4,192 (3.5)	162.8 (-1.6)
사업서비스업	1,772 (5.3)	173.4 (2.2)	1,874 (5.7)	171.3 (-1.2)
교육서비스업	3,190 (5.0)	152.1 (0.1)	3,365 (5.5)	149.9 (-1.4)
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2,602 (6.1)	174.8 (1.8)	2,669 (2.6)	171.7 (-1.8)
여가관련 서비스업	2,180 (4.1)	157.8 (1.0)	2,312 (6.0)	157.0 (-0.5)
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	2,222 (2.0)	169.5 (-2.2)	2,228 (0.3)	167.7 (-1.1)

주: 1) (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월평균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.

2) 1~9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

3) 초과급여는 연장(야근근로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고 특별급여는 상여금, 성과급, 임금인상소급분,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함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은행, <http://ecos.bok.or.kr/>